

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1. 18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지방재정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 명시함(안 제5조)
- 나. 재향군인회 운영 및 육성·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 명시함(안 제6조제4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(2016.10.06~10.26) 결과, 제출의견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3) 규제심사 : 비규제
 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(미반영)
 - 5) 법제심사 : 원안동의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제4호 중 “육성·발전”을 “운영 및 육성·발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예산의 지원) <u>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단,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와 관련,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</u></p>	<p>제5조(예산의 지원) <u>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6조(지원대상사업) 법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<u>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	<p>제6조(지원대상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 <u>운영 및 육성·발전</u>----- -----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
연락처	(033) 330 - 2150

【관계법령】

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

[시행 2016.5.29.] [법률 제14256호, 2016.5.29., 일부개정]

제5장 재정 <개정 2008.12.31.>

제16조(재정)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입,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6.5.29.>

③ 삭제 <2016.5.29.>

[전문개정 2008.12.31.]